

# 무배당 Chubb 크라운치료보장보험 I 1904 사업방법서 별지

1. 보험의 종류 : 장기손해보험 / 장기기타보험
2. 보험종목의 명칭 : 무배당 Chubb 크라운치료보장보험 I 1904
3. 보험의 목적
  - 피보험자의 신체
  -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손해
4. 보험기간, 보험료 납입기간,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

구 분		보험기간	가입나이	납입기간	납입주기
기본 계약	· 기본계약(New크라운치료보장)	10년만기	1~70세	전기납	월납 연납
		9년만기	71세		
		8년만기	72세		
		7년만기	73세		
		6년만기	74세		
		5년만기	75세		
선택 특약	· 치주질환수술(치주소파술 포함) 보장 특별약관	10년만기	1~70세		
		9년만기	71세		
		8년만기	72세		
		7년만기	73세		
		6년만기	74세		
		5년만기	75세		
	· 치주질환수술(치주소파술 포함) 및 턱관절장애 치료보장 특별약관 ·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· 상해 80%이상 후유장애보장 특별약관 · 틀니치료보장특별약관Ⅱ ·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· 보이스피싱손해보장 특별약관 ·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(자기부담금 2만원) 특별약관 ·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(자기부담금 2만원) 특별약관	10년만기	20~70세		
		9년만기	71세		
		8년만기	72세		
		7년만기	73세		
		6년만기	74세		
		5년만기	75세		

주)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,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

5.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: “해당사항 없음”

6. 배당에 관한 사항 : “해당사항 없음”
7.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: “해당사항 없음”
8. 갱신탁약에 관한 사항 : “해당사항 없음”
9. 보험료운영에 관한 사항 : “해당사항 없음”
10.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시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
  -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보험료는 평균공시이율 + 1% 범위 내에서 적용함.
11.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
  -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,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함.
12. 추가적립보험료에 관한 사항 : “해당사항 없음”
13.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: “해당사항 없음”
14.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
  -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“평균공시이율 + 1.5%”로 함
15.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: “해당사항 없음”
16. 담보별 가입제한에 관한 사항
  - 기본계약(New크라운치료보장)의 보험가입금액은 30만원을 한도로 함
  - 치주질환수술(치주소파술 포함) 및 턱관절장애 치료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1만원을 한도로 함
  - 치주질환수술(치주소파술 포함)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1만원을 한도로 함
  -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2,000만원 고정으로 운영함
  - 보이스피싱손해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1,000만원 이하로 운영함
  -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(자기부담금 2만원) 특별약관과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(자기부담금 2만원)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100만원 고정으로 운영함
  -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(자기부담금 2만원) 특별약관과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(자기부담금 2만원) 특별약관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음
17.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사항
  - 가.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.
    - 1)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
    - 2)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
    - 3)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
    - 4)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
  - 나.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변경된 보장내용을 적용함.
  - 다. 회사는 가.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(등기우편 등), 전화(음성녹취)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, 보험료 수준,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림.

- 라. 가.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, 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,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(또는 반환받을) 금액이 발생 할 수 있으며, 이를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안내함.
- 마. 회사는 가.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재산출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함.
  - :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,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보험금이 변경될 수 있음
- 바. 가.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‘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며,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음.

18. 기타

- 회사는 통신판매(TM, 홈쇼핑 등)시 효율적인 상품설명을 위하여 판매플랜을 설정하여 판매할 수 있음.
- 플랜의 선택은 계약자의 결정에 의하며, 플랜이 포함하고 있는 선택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제외될 수 있음.

**Chubb. Insured.<sup>SM</sup>**